

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3. 10. 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탁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
(제5조 운영 및 관리)

2. 수정 주요내용

- 제5조(운영 및 관리)에서,

‘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’
를 “삭제”

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1. 제5조(운영 및 관리)에서,

‘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
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’를,
“삭제”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농업기계화촉진법</u> 」 제3조의 <u>규정에 의거</u>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 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,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기계 임대사업 <u>운영에 관한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농업기계화 촉진법</u> 」 제3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운영에</u>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농업기계화 촉진법</u> 」 제3조에 따라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영에</u> ----- -----.
제2조(위치)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<u>구미시농업기술센터내에</u> 둔다.	제2조(위치)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<u>구미시농업기술센터내에</u> 두며,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<u>적정 장소에 분소를</u> 둘 수 있다.	제2조(위치)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<u>구미시농업기술센터내에</u> 두며,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<u>적정 장소에 분소를</u> 둘 수 있다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	제3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
1. “ <u>농기계 임대사업</u> ” (이하 “ <u>임대사업</u> 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구미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.	1. “ <u>농기계 임대사업</u> ” (이하 “ <u>임대사업</u> ”이라 한다)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.	1. “ <u>농기계 임대사업</u> ” (이하 “ <u>임대사업</u> ”이라 한다)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 <u>임대농기계</u> ” (이하 “ <u>농기계</u> ”라 한다)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.	2. “ <u>임대농기계</u> ” (이하 “ <u>농기계</u> ”라 한다)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.	2. “ <u>임대농기계</u> ” (이하 “ <u>농기계</u> ”라 한다)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.
3. “ <u>농기계 임대사용료</u> ” (이하 “ <u>임대료</u> ”라 한다)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	3. “ <u>농기계 임대사용료</u> ” (이하 “ <u>임대료</u> ”라 한다)란 ----- ----- ----- -----.	3. “ <u>농기계 임대사용료</u> ” (이하 “ <u>임대료</u> ”라 한다)란 ----- ----- ----- -----.

4. “사용자”라 함은 구미시로 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<u>자</u>를 말한다.	4. “사용자”란 ----- ----- ---- 사람을 -----.	4. “사용자”란 ----- ----- -- 사람을 -----.
제4조(기능)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제4조(기능) ----- 각 호-----.	제4조(기능) ----- 각 호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1.·2. (개정안과 같음)
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~ ③ (생 략)	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④ 삭제
제6조(관리요원)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<u>농업기술센터</u> 소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6조(관리요원) ----- ----- <u>농업기술센터소장</u>----- -----.	제6조(관리요원) ----- ----- <u>농업기술센터소장</u>----- -----.
제7조(사용허가 및 교육) ①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<u>자</u>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제7조(사용허가 및 교육) ① ----- <u>사람</u>은 ----- ----- -----.	제7조(사용허가 및 교육) ① ----- <u>사람</u>은 ----- ----- -----.
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<u>각호</u>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	②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1.·2. (개정안과 같음)
제8조(임대기준 및 기간) ① <u>농기계</u>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,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	제8조(임대기준 및 기간) ①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 <u>농기계를 임대</u>하며----- -----.	제8조(임대기준 및 기간) ①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 <u>농기계를 임대하며</u>----- -----.
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되, 사용기간은 3일을 <u>초과</u> 할 수 없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초과할</u> -----.	② ----- ----- ----- <u>초과할</u> -----.

다만,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제9조(임대대상농기계와 임대료)

① 임대대상 농기계 및 임대료는 구입가격,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[별표] 와 같다.

②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임대료를 [별표]의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농기계의 운반비용, 사용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
제10조(임대수입금) 시장은 농기계 임대 수입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2. (생 략)

제11조(임대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감면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반액면제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

- 한 차례만 연장할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임대대상농기계와 임대료)

① -----

----- 별표와 같이 한다.

② ----- 따라 -----
----- 별표 -----
-----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-----.

③ -----

----- 따라 -----
-----.

④ -----
----- 그 밖에 -----
-----.

제10조(임대수입금) -----
----- 각 호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임대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
----- 한 차례만 연장할 -----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임대대상농기계와 임대료)

① -----

----- 별표와 같이 한다.

② ----- 따라 -----
----- 별표 -----
---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-----.

③ -----

----- 따라 -----
-----.

④ -----
----- 그 밖에 -----
-----.

제10조(임대수입금) -----
----- 각 호 -----

-----.

1. 2.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임대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절반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
경우

2. 전액면제 : 재해·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2조(임대료의 반환)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.

1.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

가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나. (생략)

2. 전액 반환

가. 농기계의 출고전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. 다만, 출고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중 반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② 시장은 재해·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대료의 반환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일부 반환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

가.-----

불가능한 ----

나. (현행과 같음)

2. 전액 반환 :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
② 시장은 재해·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대료의 반환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일부 반환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

가.-----
----- 불
가능한 ----

나. (개정안과 같음)

2. 전액 반환 :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

제13조(임대계약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. ~ 3. (생략) 4. <u>허위</u>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. (생략) ② (생략) 제14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 ①·② (생략)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·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. 제16조(임대계약의 제한) 시장은 다음 <u>각호</u>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<u>범위</u>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. 1. 임대료를 <u>3회이상</u>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.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<u>자로서 3회이상</u>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3.·4. (생략)	제13조(임대계약의 취소) ① 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거짓</u>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따른 주의나 관리임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</u>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 제16조(임대계약의 제한)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 1. ----- <u>3회 이상</u> ----- ----- 2. ----- ----- <u>사람으로서 3회 이상</u> ----- -----. 3.·4. (현행과 같음)	제13조(임대계약의 취소) ①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4. <u>거짓</u> ----- ----- 5.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제14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따른 주의나 관리임무를 게을리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</u>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 제16조(임대계약의 제한) -----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. 1. ----- <u>3회 이상</u> ----- ----- 2. ----- ----- <u>사람으로서 3회 이상</u> ----- -----. 3.·4. (개정안과 같음)
---	--	---

제17조(비치대장) <u>농기계임대사업</u>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다음 <u>각호</u>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. 1. ~ 3. (생략) <신설>	제17조(비치대장) <u>임대사업</u>----- ----- -- <u>각 호</u>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8조(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)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.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 위원은 기술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업관련 기관의 전문가,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, 작목반장,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.	제17조(비치대장) <u>임대사업</u>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. 1. ~ 3. (개정안과 같음) 제18조(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)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.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 위원은 기술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농업관련 기관의 전문가,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, 작목반장, 농기계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농기계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.
제18조 (생략) 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9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 제20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 -----.	제19조 (현행 제18조와 같음) 제20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----- -----.